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0. 31 선고 2024가단12068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## 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9. 26.

판결 선고2024. 10. 31.

## 주 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, F에 있는 G건물 제18층 H호에 관하여 2023. 2. 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0,6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3,06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. 위 회사는 무자력 상태에서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2023. 2. 6.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3. 2. 8.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그 후 피고는 2023. 4. 25.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 주었다. 피고와 위 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액 상당인 3,060만 원을 가액배상 하여야 한다.

## **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**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**판사박민수**